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o WHO 팬데믹 협약협상 INB 13차회의 참석

☐ 과제명

- o 2024 팬데믹 조약의 주요 쟁점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 출장기간

- o 2025.02.16. ~ 2025.02.23

☐ 출장국가(도시)

- o 스위스(제네바)

☐ 출장자

- o 신지영 부연구위원, 이홍림 연구원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2025.02.16	스위스(제네바)	-	·국가 간 이동 (한국 -> 스위스)
2025.02.17	스위스(제네바)	WHO 본부	·WHO 제13차 팬데믹 협약 협상(INB 13) 회의 참석 및 의제대응
2025.02.18	스위스(제네바)		
2025.02.19	스위스(제네바)		
2025.02.20	스위스(제네바)		
2025.02.21	스위스(제네바)		
2025.02.22	대한민국/인천	-	·WHO 제13차 팬데믹 협약 협상(INB 13) 회의 참석 및 의제대응 ·국가 간 이동 (스위스 -> 한국) ·시차로 인해 스위스 기준 22일 출국 후 한국 기준 23일 도착

2 출장 주요내용

※ 대표단에게만 오픈된 세션(Closed session)은 간략하게만 정리,
온라인으로 오픈된 세션(Open session)은 상세 내용 정리함

①	WHO 팬데믹 협약협상 INB 13차회의 참석 및 의제대응
일 시	2025.02.17.(월)
장 소	스위스(제네바), WHO 본부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이민원 공사참사관, 이하경 전문관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김다현 주무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지영 부연구위원, 이홍림 연구원

○ 세션 개최 및 의제 · 작업 프로그램 채택

-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모든 회원국의 지속적인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제78차 세계보건 총회에 맞춰 회원국들이 WHO 팬데믹 협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INB(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Body)가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언급함. 또한 미국의 WHO 탈퇴에 대하여 미국의 재고를 요청함. 사무총장은 INB의 진전에 감사를 표하고 전 세계가 다음 팬데믹에 공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법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INB13 회의는 온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관련 이해관계자는 매일 시작되는 짧은 오픈 세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음.
- 의제와 작업 프로그램을 채택한 후, INB 초안 작성 그룹(drafting group)은 작업 프로그램에서 합의한 대로 다음 조항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였음: 제1조(용어 사용), 제3조(원칙 및 접근 방식), 제4조(팬데믹 예방 및 감시), 제11조(팬데믹 관련 보건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 및 노하우 이전), 제12조(병원체 접근 및 이익 공유 시스템)

○ 1조(용어 사용)

- 팬데믹 관련 보건제품 정의와 관련하여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과 팬데믹 협약간의 동기화를 어느 수준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개정되는 IHR까지 팬데믹 협약에 자동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일부 국가는 팬데믹 협약 내 정의가 수정될 수 있다는 것, 즉 ‘자동 동기화’에 대해 자국의 의회가 수용을 어려워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함.
- 1조의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those in vulnerable situations)”표현에 대해 “those”, “person”, “people”등의 용어 사용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으며, ‘인도주의적 환

경' 표현에 대한 논의도 계속됨.

○ 3조(원칙 및 접근 방식)

- 일부 선진국은 여성이 팬데믹 상황에서 각종 위험 및 불이익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 (Pandemic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PPPR)의 모든 과정과 모든 수준에서 여성의 참여와 영향력이 높아져야 함을 주장함. 많은 국가에서 “성평등(gender equality)” 표현이 팬데믹의 부정적, 불균형한 영향을 받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UN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언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건강형평성은 모든 사람의 관점에서 언급되어야 하지 gender 관점에 한정하여 언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gender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발언함.

○ 21조(당사국 총회)

- 조항 내에 IHR 실행 위원회(Implementation committee)와의 연계를 언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만장일치로(by consensus)”의 표현 포함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음. 일부 국가에서는 ‘만장일치로’ 문구가 있어야 당사국의 이행 수용도도 높을 것이며, 이 문구가 있더라도 긴급상황에서는 다른 의사결정 과정을 이행하는 것을 완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발언함.

○ 11조(팬데믹 관련 보건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 및 노하우 이전)

- 정부소유 기술 이전 내용 관련하여 현재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국가도 있었지만, 일부 선진국에서는 정부소유 기술이 무엇인지 명확치 않다며(100% 소유해야 정부 소유 기술인지, 10%만 소유해도 정부 소유 기술인지 등이 명확치 않음) 관련 내용을 아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함.
- 팬데믹 비상상황시 생산자에 대한 정보공유 장려/촉구 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내용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자발적으로’ 관련 문구가 추가로 필요 없다고 주장함.

②	WHO 팬데믹 협약협상 INB 13차회의 참석 및 의제대응
일 시	2025.02.18.(화)
장 소	스위스(제네바), WHO 본부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이민원 공사참사관, 이하경 전문관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김다현 주무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지영 부연구위원, 이홍림 연구원

○ 13조(공급망 및 물류)

- ‘신속하고 방해받지 않는“ 표현에 대해서 일부 선진국은 해당 내용을 아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하였음. 의장단은 해당 표현을 다시 한번 고려해줄 것을 요청함. 개발도상국은 대체로 현재의 의장단 수정안에 찬성함.
- “국내법에 따른” 표현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음.

○ 13조 bis(조달 및 유통)

-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 표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일부 국가 및 개발도상국은 ‘필요한/불필요한’ 장벽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한 표현 삭제를 주장함. 선진국들은 대체로 ‘불필요한’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고, 해당 표현이 WTO 각료선언(WTO Ministerial Declarations)에도 사용되고 있음을 근거로 내세움.
- 팬데믹 백신과 관련한 법적 위험 관련 내용에서 개발도상국은 대체로 “법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하며 해당 표현을 반대하였고, 이전의 수정안을 선호하였음.

○ 4조(팬데믹 예방 및 감시)

- 개발도상국에서는 대체로 의장단에서 새로 추가한 텍스트들의 의미가 전반적으로 중복되는 것 같고 “점진적으로 강화한다” 관련 표현 역시 삭제하기를 요청하였음. 또한 단순한 “자국의 역량을 고려하여” 라는 표현보다 “자국의 역량과 공중보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와 같은식으로 표현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가해줄 것을 요청함.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공중보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의 표현을 추가하는 것을 반대함.
- 일부 선진국에서는 남은 회의 기간동안 너무 급하게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언급하였고, 4조의 내용과 팬데믹 예방에 관한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사무국에서는 팬데믹 예방과 대응 모두 모든 국가의 노력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며 예방과 대응 둘 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에 둘 중 어느 개념에 더 투자 할 것인지를 회원국 간 결론을 내야한다고 발언함.

③	WHO 팬데믹 협약협상 INB 13차회의 참석 및 의제대응
일 시	2025.02.19.(수)
장 소	스위스(제네바), WHO 본부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이민원 공사참사관, 이하경 전문관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김다현 주무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지영 부연구위원, 이홍립 연구원

○ 12조(병원체 접근 및 이익 공유 시스템)

- 의장단은 병원체 접근 및 이익 공유(Pathogen access and benefit sharing, PABS) 시스템이 누구에 의해 관리될 것인지, PABS 구성요소가 부속서 형태로 관리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새로 수정했음을 언급하였음. 개발도상국 일부 국가는 WHO에 의해 관리되는 내용에는 찬성하지만 뒷 부분 부속서와 관련 된 언급을 반대하였고, PABS 약관(instrument)과 팬데믹 협약 자체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관리 부분에 있어서 “관련 조직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관련된 표현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도 “관련 조직”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지만,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대해서 염려하는 국가도 있었으며, WHO 현장에 이미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로 관련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음.
- 개발도상국은 대체로 “추적 기능의 실용성” 표현이 모호하기 때문에 “실용성” 표현을 원치 않는다고 언급하였음. 그러나 일부 선진국에서는 실용성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유사한 단어로 바꾸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함.
- “데이터에 대한 개방형 액세스(Open access to data)” 정의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였으며, 정의를 각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일부 국가는 이를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대하였고, 개방형 액세스에 대한 단어를 넣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 국가도 있었음.
- “연간 금전적 기여(annual monetary contributions)” 표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 기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팬데믹 협약은 대유행성 인플루엔자 대비 프레임워크(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Framework, PIP framework)와 달리 더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④	WHO 팬데믹 협약협상 INB 13차회의 참석 및 의제대응
일 시	2025.02.20.(목)
장 소	스위스(제네바), WHO 본부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이민원 공사참사관, 이하경 전문관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김다현 주무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지영 부연구위원, 이홍립 연구원

○ 4조(팬데믹 예방 및 감시)

- 사무국에서는 4조 내용에서 야생동물(wildlife)과 관련된 팬데믹 위험을 식별하고 줄이기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음.

- ‘야생동물, 농장 및 반려동물과 관련된 환경, 활동 및 인간 상호 작용과 관련된 팬데믹 위험을 식별하고 줄이기 위한 조치’ 부분에 대해 개발도상국에서는 대체로 해당 내용이 불필요하게 길다고 언급하면서 보다 간결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한 국가는 국제적 거시적 맥락의 협약이 농경 등 산업의 세부적 영역 내용을 논의 한다면 각 국의 행정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현재 내용에 찬성하였고, 한 국가는 감염병의 원천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함. 관련된 내용은 향후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하였음.
- ‘다부문 감시 및 자국내 감시·위험 평가 결과 공유’에 대한 논의 진행함. 개발도상국에서는 대체로 “신종 또는 재출현 병원체의 탐지”라는 표현보다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신종 또는 재출현 병원체의 탐지”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언급하였음. 사무국에서도 해당 표현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으며 국가의 위험 평가를 공유하는 것 역시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함.
- 일부 선진국은 다부문 감시(multisectoral surveillance)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으며, WHO에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에 대한 국가간 의견차가 있어 논의가 계속되었음.
- ‘다양한 환경, 기후, 사회, 인위적 및 경제적 요인이 감염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 전략의 개발 및 이행에 있어 요인 고려’와 관련 된 내용은 다루는 범위가 환경, 기후 등 다소 넓다는 의견이 일부 국가에서 제시되었음.
- 4조의 많은 내용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의견 차가 계속되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⑤	WHO 팬데믹 협약협상 INB 13차회의 참석 및 의제대응
일 시	2025.02.21.(금)
장 소	스위스(제네바), WHO 본부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이민원 공사참사관, 이하경 전문관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김다현 주무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지영 부연구위원, 이홍립 연구원

○ 12조(병원체 접근 및 이익 공유 시스템)

- 12조 논의 추가 진행함. 개발도상국에서는 참여 제조업체가 WHO와 체결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legally binding contract)”의 표현 추가를 통해 해당 내용의 강화를 요청하였음. 그러나 선진국측에서는 대체로 해당 표현을 반대하였으며 해당 내용이 현실적으로 미칠 영향을 아직 이해할 수 없는데 너무 명확한 내용으로 정의하는 것이 이르다고

언급함. 또한 12조 내용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에 한정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사무국에서는 PABS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며 연구자 및 생산기업들과 상의 해보았을 때 해당 내용들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현재 PABS 내용의 현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음.
- 개발도상국에서는 기술 이전, 라이선스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선진국과의 의견 차로 12조의 많은 내용들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함.

○ 다음 회의 진행사항 논의

- 2025년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제13차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이룬 진전을 바탕으로 회의가 끝날때까지 WHO 팬데믹 협약 초안에 대한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결정 하였음.

⑥	회의 논의사항 정리 및 귀국
일 시	2025.02.22.(토)
장 소	스위스(제네바), WHO 본부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이민원 공사참사관, 이하경 전문관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김다현 주무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지영 부연구위원, 이홍립 연구원

○ 회의 논의사항 정리 및 향후 발언문, 비공식 회의 관련 대표단 내부 논의

- 3월 12일부터 INB 비공식 회의 추가로 진행 예정

○ 제네바 국제공항 출발, 인천 도착 및 귀국

장 소 WHO 본부 회의장 및 회의 진행 사진

